

사양벌꿀 표시 관련 알림

□ 제품명

- 식품유형이 사양벌꿀인 경우, 해당 제품명에 '벌꿀' 표현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식품유형명인 '사양벌꿀'을 명확히 써야함

* 예시) 000 벌꿀(식품유형: 사양벌꿀) X, 000 사양벌꿀(식품유형: 사양벌꿀) ○

- √ 식품유형이 사양벌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'벌꿀'로 썼을 경우,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·혼동할 수 있는 표시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

※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제2조제3호너목

□ 사양벌꿀 주표시면 의무문구

- 사양벌꿀은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'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당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.'를 표시하여야 함

- √ 해당 문구는 주표시면에 문구 수정 없이 문장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주표시면*이 아닌 병과 뚜껑을 잇는 띠지 혹은 제품 뒷면에 표시 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

* 주표시면 : 용기·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·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,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

※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Ⅲ. 1. 어. 2). 가). (3)

사양벌꿀, 이렇게 표시하세요!

사양벌꿀의 정확한 표시를 위한 안내

1 제품명은 '사양벌꿀'로 표시해야 합니다.



잘못된 표시



벌꿀로
오인·혼동할 우려



올바른 표시



식품유형과
일치하여
적정한 표시

2 주표시면에 반드시 아래 문구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.

의무문구

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
꿀벌이 설당을 먹고 저장하여
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.

✓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축약할 수 없습니다.

✓ 글자 크기는 **12포인트 이상**이어야 합니다.

3 의무문구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?

주표시면이란?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면

가능 ✓



주표시면

(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
통상적으로 보여지는 면)

불가 ✗



제품 뒷면 표시



병과 뚜껑을 연결하는
측면 띠지 표시



측면 표시

❗ 주표시면에 의무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기준 위반

✓ 한눈에 체크!

확인사항	적합 여부
제품명에 '사양벌꿀' 사용	✓
제품명을 '벌꿀' 만 사용	✗
의무문구 그대로 표시	✓

확인사항	적합 여부
의무문구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	✓
의무문구 주표시면 표시	✓
의무문구 뒷면·띠지·측면 표시	✗



관련 규정

•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III. 1. 여. 2). 가). (3)
•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 제2조제3호너쪽

※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